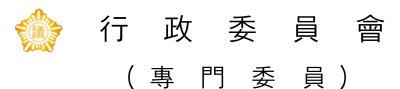
영등포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2007. 5.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안일 : 2007년 5월 4일

○ 회부일 : 2007년 5월 8일

2 제안이유

○ 소식지의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 조사 결과 새로운 제호가 선정됨에 따라 소식지 제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내고장 영등포로"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로 개정 (안 제2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별 첨

○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 반영

○ 입법예고 : 생략

- 생략사유 :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조사, 제호 공모 등은

이미 인터넷,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였기에 입법

예고를 생략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반회보"의 명칭을 "소식지"로 변경하였으나 구민들로부터 그 제호인 "내고장 영등포"란 명칭 조정의견이 있어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가 구민에게 보다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으로 새롭게 다가서기 위하여 소식지 제호에 관한존치·변경 공모를 통하여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붙여 쓰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 원회"로 붙여 쓰고

제7조제2항 중 "4인이상 8인이내"를 "4인 이상 8인 이내"로 띄어 쓰며

제7조제3항과 제8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는 "남은 임기로"로 하며

제8조제5호 중 "기타 반회보"를 "그 밖에 소식지"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완납시까지"를 "완납 때까지"로 하며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고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18

보고자 : 김 완 섭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2. 소식지 제호 존치·변경 공모결과
- 3. 수정의견대비표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 <u>내고장</u>	제2조(제호)" <u>영등포 행복</u>
<u>영등포"로</u> 한다.	<u>소식"으로</u>
제12조 (위원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제12조(위원수당 등) ①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	
하여서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 등을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지급할 수 있다.	
②소식지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	②
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소식지 제호 존치·변경 공모결과

□ 선호도 조사

◦ 조사기간 : 2007. 3.22 ~ 3. 31(9일 간)

• 조사대상 : 전직원 및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 조사방법 : 전자문서 및 인터넷 신문

□ 공모결과

순번	공모작	공모숫자	비고
1	영등포 행복소식	136	
2	내사랑 영등포	95	
3	행복도시 영등포	61	

[붙임 3]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 (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 <u>내고장 영등포"</u>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개정안과 같음)
<u>로</u> 한다.	_ 복소식"으로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소식지의 편집을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2
함하여 <u>4인이상 8인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4</u> 인 이상 8인 이내
③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		③
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 에		<u>각 호의 어느 하나</u>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2. (생략)		1. ~ 2. (개정안과 같음)
④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		4
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으로</u> 한다.		<u>남은 임기로</u>
⑤ (생략)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다음 각호</u>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u>의 1</u> 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u>각 호의 어느 하나</u>
1. ~ 4.		1. ~ 4. (개정안과 같음)
5. <u>기타 반회보</u> 발행에 필요한 사항		5. <u>그 밖에 소식지</u>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 (광고의 게재 등) ① ~ ② (생략)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 ~ ② (생략)
③광고료를 <u>기한내</u> 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③ 기한 내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u>완납시까지</u> 서		완납 때까지
울특별시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략)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2조 (위원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제12조(위원수당 등) ①	제12조(위원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②소식지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부 칙</u>	<u> </u>
	이 조례는 공포한 <u>날로부터</u> 시행한다.	날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 집위원회
제7조제2항	4인이상 8인이내	4인 이상 8인 이내
제7조제3항	<u>각호의 1</u>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제4항	<u> 잔임기간</u>	남은 임기
제11조제3항	기한 내완납시까지	기한 내완납 때까지
부칙	<u>날로부터</u>	<u>날부터</u>